

의안번호	2215253
의 퇴 인	염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3.16.
추계번호	25B7064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50조제3항 신설 (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)	공장 및 창고시설은 화재발생 시 불꽃 또는 불티의 비산에 의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52조제5항 신설 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·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(제5항 신설)	의무규정
	안 제52조제6항 신설 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 설비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(제6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0조제3항 신설 (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2조제5항 신설 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
	안 제52조제6항 신설 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지하주차장 내·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로 하며,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건축물의 신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불연재료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, 공공 시설물 중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특정하기 어렵고,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공장·창고시설 및 지하주차장 시설 중 개정안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현황에 관한 정보도 부재하며, 내화구조 전환 및 불연재료 교체에 따른 공사비 단가는 대상 시설의 규모, 구조,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,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현행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6조¹⁾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㎡ 이상인 공

1) 제56조(건축물의 내화구조)

-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)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. 다만,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밀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.
1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종교집회장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위탁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
 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·식물원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·강당, 수련시설, 운동시설 중 체육관·운동장, 위탁시설(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), **창고시설**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·촬영소,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·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**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**
 3. **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** 다만,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 4.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(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5.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. 다만, 단독주택(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발전시설(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), 교도소·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(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

장시설 및 500㎡ 이상인 창고에 한해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.
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.